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7925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나792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가단50712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AB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김재대

변론 종결 2024. 11. 8.

판결 선고 2024. 12. 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가단507126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9. 27. 접수 제3238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D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10. 12. 접수 제340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이 법원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됨으로써,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소 취하로 실효되었으므로, 항소취지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은 2021. 12. 9.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E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보험계약자 : E

○ 피보험자 :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 계약기간: 2021. 12. 9. ~ 2022. 3. 31.

○ 보험가입금액 : 200,000,000원

○ 보증내용 : 물품공급 기본계약에 따른 선급금 반환 지급보증

나. 이후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였고, F은 위 증권을 담보로 E에 선급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E는 2022. 3. 31.경 위 물품공급 기본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23. 2. 23. F에 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B은 자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① 2022. 9. 27. 피고 C에게 2022. 9. 26.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고, ② 2022. 10. 12. 피고 D에게 2022. 10. 12. 자 매매계약(대금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2023. 2. 14.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고, ② 2023. 2. 20.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기입되었다.

바. 원고 보조참가인은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피고들을 상대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11. 17. 'B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2024. 11. 7. 그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 보조참가인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

사. B은 인천지방법원 2024하단100466호로 파산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4. 6. 21. 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AB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위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다음 그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부인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계약이 파산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도 해당한다.

3. 판단

가. 파산, 소송수계 및 부인권 행사

1)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은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으며,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인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B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라 중단되고, 위 소송을 수계한 원고는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 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한편,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등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다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B의 채무초과 상태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2호증, 제1심 법원의 인천 서구 S 행정복지센터,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사단법인 N 민원서비스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 무렵, B의 적극재산은 높게 평가하더라도 약 755,000,000원[= 이 사건 주택 120,000,000원 + 인천 서구 아파트 635,000,000원(시세 상위 평균가 기준)]에 불과한 반면, B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소극재산 평가액은 위 적극재산 평가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므로,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매매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른바 편파행위에도 해당되고,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을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이상, 채무초과 상태 여부는 부인권 행사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사해성 및 편파성 등 위 기초사실, 관련 법리 및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통해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를 심화시킨 점, ㉡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여러 채권자들보다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을 향후 배당에서 유리하게 한 점, ㉢ B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것 또한 사실상 특정 채권자인 피고 C 또는 피고 D에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B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즉,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경우 B의 사해의사를 비롯하여 사해성과 편파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이 파산채권자인 원고 보조참가인 등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된다.

다. 선의의 수익자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실질을 같이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C이 2022. 5. 27. B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B이 R에게 2022. 3. 25. 12,000,000원, 2022. 6. 3. 108,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 ② B과 R은 2018. 3.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로 각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B과 피고 D는 2022. 10. 12. 'B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120,000,000원(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0원 승계로

같은)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B과 피고 C 사이의 금전 거래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원인 관계 및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② B과 피고 C 측의 마지막 금전 거래가 2022. 6.경 이루어졌는데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난 뒤에야 체결된 점, ③ B과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작성된 점, ④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고, B과 피고들은 친인척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금전 거래 내역과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등만으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2)행하고, 피고 D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훈

판사정인재

판사이의진

별지